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58
----------	-------

발의연월일 : 2026. 6. 10.

발 의 자 : 김영환 · 한민수 · 박홍배  
최민희 · 진성준 · 권향엽  
허 영 · 박지혜 · 박해철  
김 윤 · 정진욱 · 이기현  
김성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전부 무효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더라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존속시키고 법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또한 연 이자율 60%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대부계약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 입장의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이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부분 뿐만 아니라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여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대부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자체도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19조 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8조, 제11조 및”을 “제8조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이자율”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를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업자”로 한다.

5.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6. 불법사금융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까지 및 제8조의2의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대부계약을 체결(제8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도록 이자율을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채권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제15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신 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  
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  
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  
우

2.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  
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보  
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가 면  
제 또는 대체 가능한 경우는

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

5.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  
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  
우

6. 불법사금융업자와 대부계약  
을 체결한 경우

② -----  
-----  
-----  
-----.

<삭 제>

2.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업자  
-----  
-----  
-----  
-----.



<p>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생략)</li><li>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u>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u> 자</li><li>3. ~ 5. (생략)</li><li>③ ~ ④ (생략)</li><li>⑤ (생략)</li></ol>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현행과 같음)</li><li>2. ----- -----<u>대부계약을 체결(제8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도록 이자율을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채권</u> 자</li><li>3. ~ 5. (현행과 같음)</li><li>③ ~ ④ (현행과 같음)</li><li>⑤ (현행과 같음)</li></ol>
---	--